

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5.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5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안 제5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실시 가능)

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안 제5
조제4항 신설)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
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다.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제5조제3항 신설)

-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지침 → 조례)
- 직제 및 정원 변경(전보 사유)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지침 → 조례)

※ 현행 조례상 2종, 지침(예규)상 4종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제9조제1호 삭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제10조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 · 소재불명
·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후임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제3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안 제5조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방법과 절차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함.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
- 안 제9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선 함.
- 안 제10조에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일로 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완 함.

- 안 별표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변경 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함.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기기관 및 시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별정직공무원들도 우리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참 고 자 료

1 영등포구 별정직공무원 근무연수 현황

(2011. 12. 31)

구 분	계	1년미만	1~2년	3~5년	6~10년	11~20년	20년이상	평균
계	10	1	2			2	5	14.3
5급상당	1	1						0.9
6급상당	4		1				3	17.7
7급상당	3		1				2	14.4
8급상당	2					2		14.1

2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11.16>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

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 7. 1>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광역시(○○○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00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 2. 00 >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2. 00 >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 2. 00>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2. 00>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00]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

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00]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00]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00]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16>

제8조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및 ④ 삭제 <1998.10.10>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7. 1]

제9조 (당연퇴직)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2. 2. 0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 2. 00 >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2009. 2. 24>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1]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2. 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신설 2010. 7.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용자격
7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p>※ <u>비 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